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12
----------	-------

발의연월일 : 2026. 2. 3.

발 의 자 : 김은혜 · 박준태 · 강승규
정성국 · 서천호 · 김소희
김기현 · 김성원 · 최수진
김선교 · 고동진 · 조배숙
곽규택 · 신동욱 · 김종양
엄태영 · 김상훈 · 김재섭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그러나,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류자격 취득일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
의 국민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제15조제2항제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3년”을 “5년”으로, “사람”을 “사람 중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 동안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하여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선거권) ① (생 략)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 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 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 다. 1. 2. (생 략)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u>3년</u>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 록대장에 올라 있는 <u>사람</u> <u><단서 신설></u>	제15조(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5년</u> ----- ----- ----- ----- <u>사람</u> 중 <u>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 부 작성일 기준 4년 동안 730 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람. 다만,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하 여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u>

	<u>의 국민에 한한다.</u>
--	-------------------